

2022년도 제2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다년도 중형 R&BD 지원과제』 공고

2022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신규 지원하는 ‘다년도 중형 R&BD 지원과제’ 2차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목 차 ■ ■ ■

1. 사업개요	2
2. 사업추진체계	3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
4. 지원대상분야 및 신청자격	9
5. 평가절차 및 기준	12
6. 관련규정	16
7. 사업신청	17
8. 제출서류	18
9. 기타 유의사항	20
붙임1. 다년도 중형 R&BD 과제설명서	23
붙임2.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현황	24
붙임3. 17개 시·도별 분야공모 세부내용	26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산업집적지 내 산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수 기업 간 협업형 R&BD과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공동비즈니스 모델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
- 다년도 중형 R&BD : 다수의 기업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제조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등 산학연협력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하 '산업집적지사업'이라 한다)의 '산학연 공동 R&D 지원' 과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근거,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여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 다년도 중형 R&BD : 프로젝트형 R&BD

1-3.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산학연 공동 R&D 지원(2022년도 제2차 공고 기준)
	다년도 중형 R&BD
공고예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50억원 규모
공모방식	분야**공모
지원기간	총 15개월 이내 (1차 연도 3개월 이내, 2차 연도 12개월 이내)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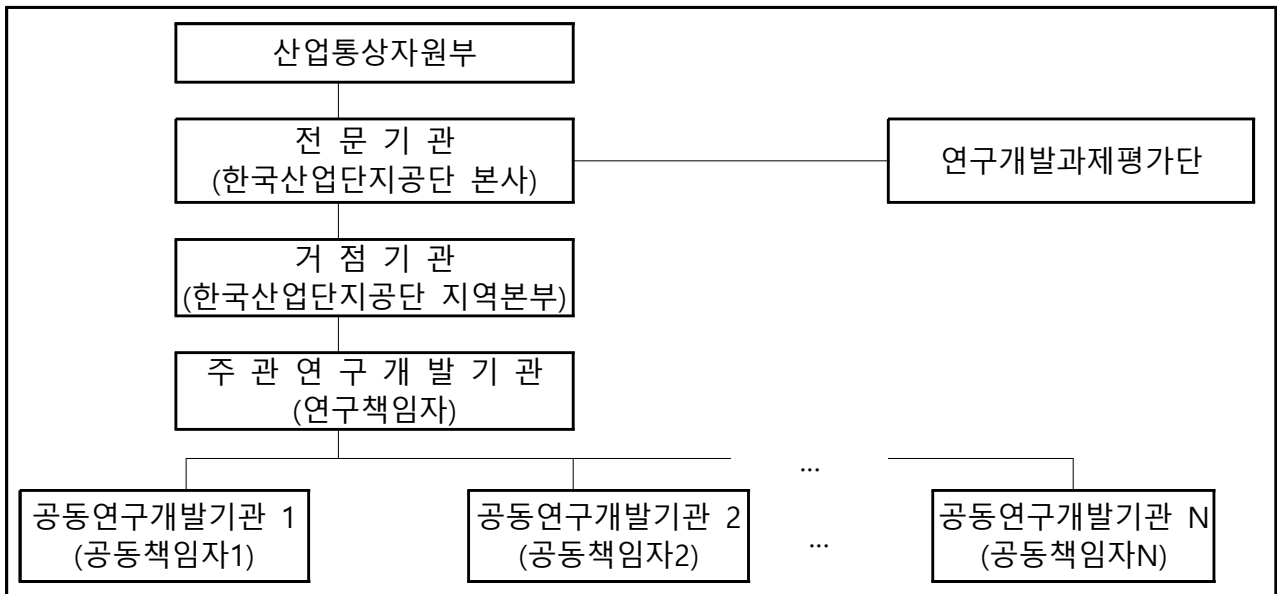
* 공고예산 및 지원기간은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이며, 정부예산 및 산업집적지사업 '22년도 제2차 공고의 신규 선정평가/수행기관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7개 시·도별 수립된 R&D 성장전략에 따른 ①특화산업, ②도전산업, ③지역연계산업 분야공모 추진(「붙임3. 17개 시·도별 분야공모 세부내용」 참고, 해당 분야 외 과제 지원불가)

- 동 지원사업은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는 '일괄협약'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에서 조정가능하며, 적정한 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2-1.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 ¹⁾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대기업 ²⁾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¹⁾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지원할 수 있음

-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④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표의 ‘변경’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음(1차 연도에 한해 적용)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최종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해당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 기술료를 최종 확정하는 시점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금액임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으로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및 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text{성과매출액} \times \text{기술기여도} \times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text{성과매출액} \times \text{기술기여도} \times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text{성과매출액} \times \text{기술기여도} \times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 「재직증명서」 및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부터인 연구자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과 달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거점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창업 여부 확인 및 업력 산정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와 제3조(사업의 개시일)로 확인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연구비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계상 가능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및 【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 또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개발비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 시 또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 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비요령」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1차 연도에 한해 적용)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 연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 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도 포함)
-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6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1명 이상 의무채용 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 연도		2차 연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억	2억	4억	6억
의무채용	1명	1명	0명	1명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 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 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함

□ 참여연구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자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인건비 계상률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활동비에는 위탁정산 수수료와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에 대한 지급보증 설정 비용***을 산정하여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 약 120만원, 지급보증 설정비용은 각 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약 1%수준(기업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연구수당은 아래 범위에서 산정하되,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기술개발 사업(다년도 중형 R&BD)** : 중소기업의 경우 협약 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잔액 발생 시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대상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 분	산학연 공동 R&D 지원(2022년도 제2차 공고 기준)																																																								
	다년도 중형 R&BD																																																								
	프로젝트형 R&BD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별 총 5억원 이내(연간 4억원 이내) - 1차 연도 3개월(1억원 이내) - 2차 연도 12개월(4억원 이내)																																																								
지원기간	총 15개월 이내 - 1차 연도('22년) 3개월 이내 - 2차 연도('23년)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컨소시엄 기업의 기술개발과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지원분야*	① 특화산업 : 지역별 R&D성장을 위한 중점업종별 주요기술 선정 ② 도전산업 : 지역별 구조혁신대상산업을 다각화 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 ③ 지역연계산업 : 지역간 정책부합도, 제조업특화도를 고려한 지역연계산업 선정																																																								
	<table><tr><th>구분</th><th>①특화산업</th><th>②도전산업</th><th>③지역연계산업</th></tr><tr><td>서울</td><td rowspan="18">세부 기술분야 붙임3. 확인</td><td>AI분야(교육)</td><td>IT제조업융복합</td></tr><tr><td>경기</td><td>IT융합</td><td>바이오헬스케어</td></tr><tr><td>인천</td><td>첨단자동차</td><td>첨단자동차</td></tr><tr><td>강원</td><td>세라믹 복합신소재</td><td>ICT융합헬스</td></tr><tr><td>제주</td><td>청정헬스푸드</td><td>스마트그리드</td></tr><tr><td>충북</td><td>지능형IT부품</td><td>바이오헬스</td></tr><tr><td>충남</td><td>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장비</td><td>친환경자동차부품</td></tr><tr><td>대전</td><td>무선통신융복합</td><td>무선통신융복합</td></tr><tr><td>세종</td><td>첨단수송기기부품</td><td>첨단수송기기부품</td></tr><tr><td>광주</td><td>지능형 스마트 기계부품</td><td>광융합</td></tr><tr><td>전북</td><td>지능형 기계부품</td><td>해양설비기자재</td></tr><tr><td>전남</td><td>에너지산업(지능형안전 관리분야 포함)</td><td>청색청정환경</td></tr><tr><td>경남</td><td>지능형 기계부품</td><td>항노화 바이오</td></tr><tr><td>부산</td><td>지능형 기계부품</td><td>지능형 기계부품</td></tr><tr><td>울산</td><td>첨단화학신소재</td><td>조선해양</td></tr><tr><td>대구</td><td>첨단소재(금속포함)부품</td><td>분산형에너지</td></tr><tr><td>경북</td><td>친환경 자동차부품 (2차전지포함)</td><td>지능형 디지털기기</td></tr></table>	구분	①특화산업	②도전산업	③지역연계산업	서울	세부 기술분야 붙임3. 확인	AI분야(교육)	IT제조업융복합	경기	I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인천	첨단자동차	첨단자동차	강원	세라믹 복합신소재	ICT융합헬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스마트그리드	충북	지능형IT부품	바이오헬스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장비	친환경자동차부품	대전	무선통신융복합	무선통신융복합	세종	첨단수송기기부품	첨단수송기기부품	광주	지능형 스마트 기계부품	광융합	전북	지능형 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전남	에너지산업(지능형안전 관리분야 포함)	청색청정환경	경남	지능형 기계부품	항노화 바이오	부산	지능형 기계부품	지능형 기계부품	울산	첨단화학신소재	조선해양	대구	첨단소재(금속포함)부품	분산형에너지	경북	친환경 자동차부품 (2차전지포함)	지능형 디지털기기
	구분	①특화산업	②도전산업	③지역연계산업																																																					
	서울	세부 기술분야 붙임3. 확인	AI분야(교육)	IT제조업융복합																																																					
	경기		I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인천		첨단자동차	첨단자동차																																																					
	강원		세라믹 복합신소재	ICT융합헬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스마트그리드																																																					
	충북		지능형IT부품	바이오헬스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장비	친환경자동차부품																																																					
	대전		무선통신융복합	무선통신융복합																																																					
	세종		첨단수송기기부품	첨단수송기기부품																																																					
	광주		지능형 스마트 기계부품	광융합																																																					
	전북		지능형 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전남		에너지산업(지능형안전 관리분야 포함)	청색청정환경																																																					
	경남		지능형 기계부품	항노화 바이오																																																					
	부산		지능형 기계부품	지능형 기계부품																																																					
	울산		첨단화학신소재	조선해양																																																					
	대구		첨단소재(금속포함)부품	분산형에너지																																																					
	경북		친환경 자동차부품 (2차전지포함)	지능형 디지털기기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연구개발과제의 지원분야 해당여부는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시 확인 후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에서 최종결정

** 연구개발계획 수립·신청 시 소요 연구개발비는 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지원기간에 맞게 산정(중형 R&BD의 경우 1차 연도('22년)는 1억원/3개월 이내, 2차 연도('23년)는 4억원/12개월 이내 산정)

*** 당해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신청 시 1차연도('22년) 사업기간 시작일은 '22.10.1.부터 설정. 다만, 협약기간은 사정에 따라 선정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4-2. 신청자격

□ 컨소시엄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 '입지요건'과 '업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최소 '3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음
 - ①기업(아래 '업종요건' 충족 필요), ②대학, ③연구기관, ④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⑤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 입지요건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 업종요건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로써 '붙임2'에 해당하는 업종

□ 유의사항

- 다년도 중형 R&BD 신청자격 입증(신청기한 이내에 관리기관 및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한 입주계약 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의 제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하나라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산학연 공동 R&D 지원사업을 통해 다년도 중형 R&BD 분류를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평가 완료 전까지 동일 분류 내 과제를 동시 수행할 수 없음(세부관리지침 제74조 제1항 후단 관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평가 시와 협약 시 각각 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아래 사전지원제외 대상 중 '5'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전지원제외(「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 관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aggi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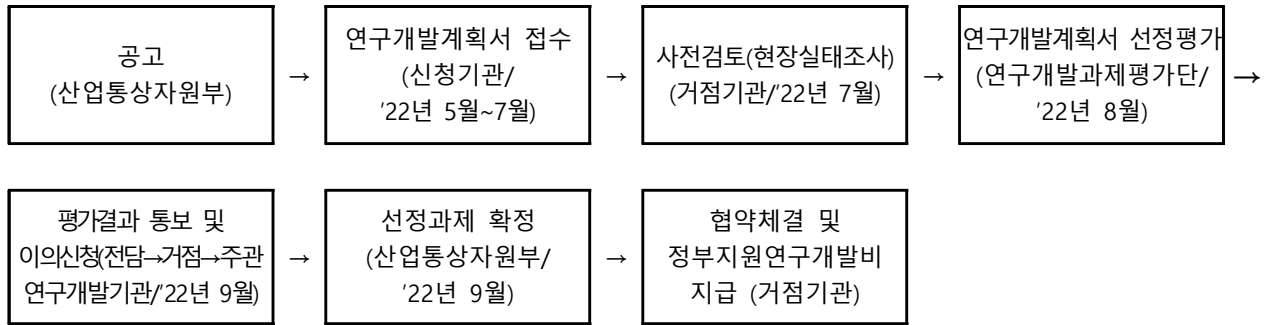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이거나,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가 미비할 시**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결과 신청된 과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신청 과제 수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제도(3책 5공)’를 초과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 총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는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산정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금액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 및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거점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수행능력 등을 현장 점검
 - *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현장실태조사 미 실시 및 평가 상정 대상에서 제외
 - * 현장실태조사 시 신청업체 운영실태,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며(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 수정·보완 불가), 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상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 상정된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실태조사결과를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붙임 과제 설명서를 참조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기획·작성 요망**)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연구개발계획서로만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본평가)를 위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청기관은 평가단을 통한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 :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다년도 중형 R&BD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수행 능력 (30)	운영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10
	주관연구개발 기관역량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추진역량 및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10
	공동연구개발 기관역량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전담인력 확보, 수행역량	10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술성) (40)	사업목표	·연구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내용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연구개발비편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구성의 적절성	10
	사업 방향의 적절성 평가	·다수 기업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및 지속적인 협업관계 구축	10
기대효과 (사업성) (30)	매출증대	·연구개발결과 기업의 매출증대 효과	10
	사업화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실용화 가능성	10
	일자리창출	·직·간접 고용 증대효과	10
합 계			100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정부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별로 배점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의 비중이 높은 평가항목부터 고려함. 단 비중이 같은 경우, ① 기대효과(사업성) → ② 연구수행능력 → ③ 가점 항목 순으로 평가항목별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평가 가점사항(단, 실질적 참여가 아닌 경우 평가단에서 불인정 될 수 있음)

- 아래의 항목당 1점으로 가점을 부여하되 연구개발과제별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점 항 목 (항목당 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점 항 목 (항목당 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연구개발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박사후과정 포함)를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
-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인서로 확인)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기업에 한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
-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집법」 제22조의4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은 지역 내 기업,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창업생태계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초기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상기 가점항목 외 다년도 중형 R&BD 과제의 경우 산단대개조 지역(거점단지 및 연계단지, 지역 포함)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추가로 3점의 가점 부여

< (참고) 산단대개조 지역(거점단지, 연계단지, 지역) 현황 >

지역	거점단지	연계단지	지역
경북	구미(국)	김천1(일), 왜관(일), 성주(일)	-
광주	광주첨단(국)	하남(일), 빛그린(국)	-
대구	성서(일)	서대구(일), 대구제3(일)	북구혁신경제벨트(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대,(구)경북도청,스마트시티 지원센터,대구종합유통단지)
인천	남동(국)	부평·주안(국), 송도지식정보(일)	송도경제자유구역
전남	여수(국)	광양(국), 울촌1(일)	여수·광양항 항만부지
경기	반월시화(국)	성남(일), 화성발안(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
경남	창원(국)	사천(일), 함안칠서(일), 김해골든루트(일)	-
부산	명지녹산(국)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일), 신평장림(일)	부산진해경자구역 지사지역,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울산	울산미포(국)	테크노(일), 매곡(일)	친환경자동차벨트(중산1·2, 매곡2·3, 이화,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전북	군산(국)	익산제2(일), 완주과학(일), 새만금(국)	-

- 아래의 항목당 1점으로 감점을 부여하되 과제별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감 점 기 준 (항목당 1점)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6. 관련 규정

☐ 근거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윤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 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사업신청

□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구분	상세 내용
공고 기간	○ 공고 기간 : 2022. 5. 25(수) ~ 2022. 7. 8(금) 16시까지 45일간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22. 5. 25(수) ~ 2022. 7. 8(금) 16시까지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사업관리시스템 (kicox.or.kr/cluster)
접수 기간	○ 접수 기간 : 2022. 5. 25(수) ~ 2022. 7. 8(금) 16시까지 (kicox.or.kr/cluster) → 공고배너 > 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공고 및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cluster)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접속하여 16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기관·인력 신규 가입 등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한국기업데이터)의 사무처리 시간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 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시, 접수 마감일은 16시) 내에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성과팀(070-8895-722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은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6시 이후 신규 접수 및 수정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kicox.or.kr/cluste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PDF)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사업관리시스템 (kicox.or.kr/cluster)
→ 공고배너 > 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신청기관이 소재한 산업단지 및 집적지를 관할하거나 가장 인접한 한국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본사

지역	주소	연락처(070-8895-****)	
		공고과제 관련	대개조산업 관련
서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5층	7353	-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7(고잔동) 4층	7448	7415
경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1층	7519	7517, 7519
경북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7 1층	7782, 7716	7782, 7716
대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7759	7754
광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5층	7913	7949
전남	전남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7991	7991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외동) 5층	7803	7803
충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2층	7616	-
전북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종합지원센터 3층	7964	7964
부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길 32 2층	7846	7843
울산	울산 남구 정동로 83(삼산동) 5층	7888	7888
강원	강원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 과학기술대학 3호관(W15) 5층	7665	-
본사	대구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7층 기업지원실 클러스터사업팀	7257	-

8. 제출서류

□ 과제 신청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쪽번호**를 기입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조치함
- **모든 서류는 PDF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하는 란이 있는 서류는 **반드시 날인 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의 종류 및 부수

서류명	제출기관		비고
	주관연구 개발기관	각 공동연구 개발기관	
①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대표로 제출)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 되어야 함
②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사)	√ (해당 사)	- 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사업자등록증	√	√	-
④ 입지요건 확인서류	√ (영리기관 해당 사)		-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 확인 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기관의 입주 확인 서류(공문 등, 입지요건(p10)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⑥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소속 기관(기업) 발행
⑦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영리기관 해당 사)	√ (영리기관 해당 사)	- 표지(회계사·세무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세무사 직인 불요 * 신생기업(당해 연도 설립)의 경우 제출불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영리기관 해당 사)	√ (영리기관 해당 사)	-
⑩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해당 사)	√ (해당 사)	- 기술료 징수과제에 한함
⑪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제 정보 이용·동의 및 청렴서약서	√	√	-
⑫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 (대표로 제출)		-
⑬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	√	- 각 연구개발기관은 해당하는 우대 및

서류명	제출기관		비고
	주관연구 개발기관	각 공동연구 개발기관	
	(해당 시)	(해당 시)	감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예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산단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지원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점을 신청한 경우, 이 표 '④ 입지요건 확인서류'를 해당 공동연구개발기관도 제출하여야 인정
⑭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3책 5공) 요약서	√	√	-
⑮ 발표자료	√ (대표로 제출)		- 파워포인트 혹은 한글로 제작한 파일을 PDF로 변환 후 업로드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되었으나, 협약 시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2조)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상황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는 조정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산학연협의체(MC) 회원가입

- 다년도 중형 R&BD과제 참여기업의 50% 이상은 산업집적지 내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해 과제협약 체결 전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산학연협의체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협약 전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사업개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3개사 이상 컨소시엄)으로 공동 연구개발 및 공동사업화 창출(프로젝트형) 지원

※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및 네트워크 활동, R&D, 사업화데이터 활용 등 패키지 지원

- (지원규모) 총 50억원 규모

- (지원금액) 국비 기준 연간 4억원 이내 / 2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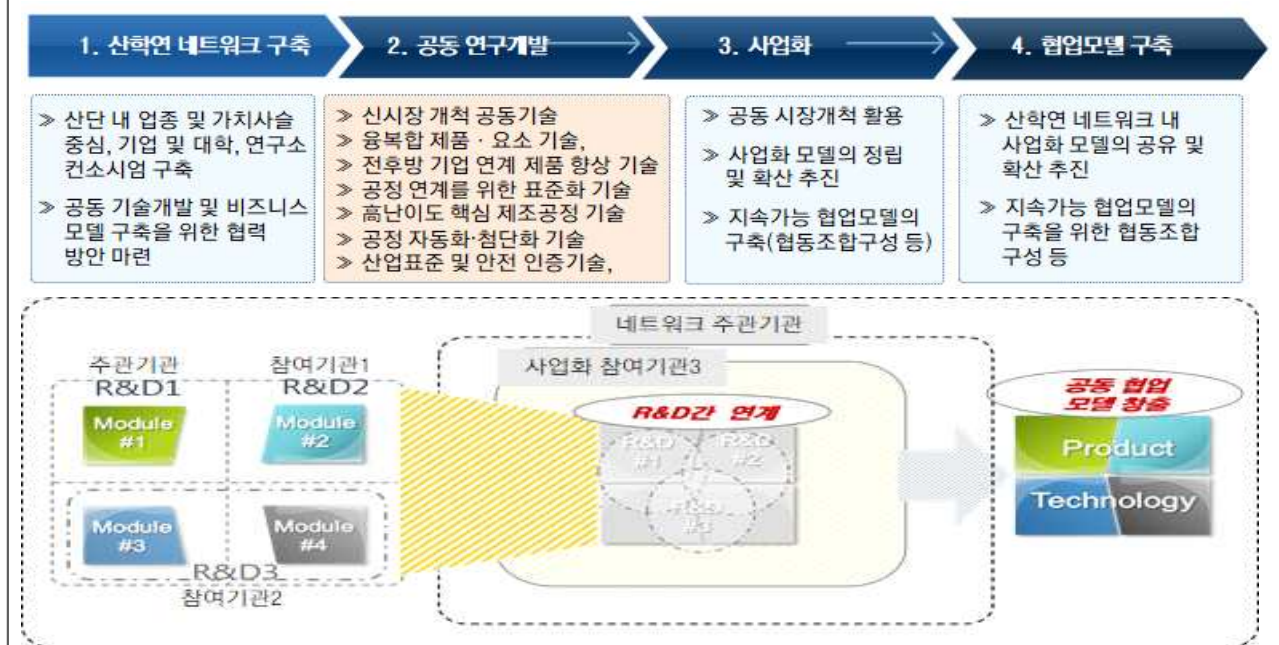
* 산단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추가 가점 부여 (3점)

- (지원내용) 다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공동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지속적인 협업 관계 구축을 지원

* 공통기술(다수기업 적용가능) 개발, 사업다각화, 해외 판로개척(GVC 구축 등), 공정연계를 통한 신제품 개발(공동 생산), 공동판매(공동 비즈니스) 등

< 프로젝트형 과제 개념 >

- ◇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과제별 각 참여기관간 역할 분담 및 수행계획을 수립, 최종 공동 협업 모델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



붙임2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현황(공고문 '4-2신청자격(p10)' 관련)

□ 지식산업 업종 리스트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분류

순번	업종코드	업종명	비고
1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제2항 제14호 환경정화 및 복원업
2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제2항 제7호 출판업
4	58112	만화 출판업	
5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6	58121	신문 발행업	
7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8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9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제2항 제6호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10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1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2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3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제2항 제15호
14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5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제2항 제16호
16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제2항 제1호 연구개발업
17	70112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18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19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0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21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22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23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24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제2항 제21호
25	71310	광고 대행업	
26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제2항 제22호
27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제2항 제5호
28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제2항 제17호
29	71531	경영 컨설팅업	제2항 제11호
30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제2항 제4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31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32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3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4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5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36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37	72921	측량업	
38	72922	제도업	
39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40	72924	지도 제작업	

순번	업종코드	업종명	비고
41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2항 제8호 전문디자인업
42	73202	제품 디자인업	
43	73203	시각 디자인업	
44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45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제2항 제12호
46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제2항 제18호
47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제2항 제19호
48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관리기관 홈페이지에 해당산업 게시해야 함	제2항 제27호
49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제2항 제23호
50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제2항 제24호
51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제2항 제25호
52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제2항 제13호
53	75994	포장 및 충전업	제2항 제9호
54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제2항 제20호
55	85301	전문대학	제2항 제10호
56	85302	대학교	
57	85650	직원 훈련기관	
58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그외) 시행령 제2항 제26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정보통신산업 업종 리스트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분류

순번	업종코드	업종명	비고
1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3항 제2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	61210	유선 통신업	제3항 제5호 전기통신업
7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8	61291	통신 재판매업	
9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10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제3항 제1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2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13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14	63111	자료 처리업	제3항 제3호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15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16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제3항 제4호

1 서울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 진단 솔루션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추론 과정 검증(Explainable AI) 관련 기술 - 인공지능의 추론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술 ○ 의사 라벨링(Pseudo Labeling) 기술 - 의료영상과 같이 수작업을 통한 레이블링 비용이 높은 경우, 저비용의 레이블 근사를 통한 비용 절감 ○ 미세 로봇 제어 관련 기술 - 미세 로봇을 목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밀하게 제어 ○ 영상분석 상황인식 시스템 -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통한 상황인식 ○ 전이 학습 관련 기술 - 목표 과업에 대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학습데이터가 부족할 때 관련 영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모델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AI분야(교육)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IT제조업융복합
----	----------

2 경기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광계측 및 센서 시스템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중적외선 감지시스템 적용을 위한 광원모듈기술 - 중적외선 영역 계측을 위한 광원파장 증대 ○ 가시광 및 적외선 융합 광계측 영상모듈 기술 - 융합영상모듈의 인체감지온도 정확도향상 ○ 생체인식을 위한 조명광학계 및 카메라모듈 기술 - 생체의 고유 패턴에 대한 이미지획득 및 알고리즘 개선 ○ 웨이퍼 레벨 적용을 위한 광학센서 제조 및 패키징 기술 - 고감도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효율적인 첨단 애플리케이션 ○ 광계측기 적용을 위한 광섬유 센서 유닛 및 제조 기술 - 온도, 가속, 스트레인, 경사 등 다양한 측정에 적용 가능한 센서 유닛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IT융합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바이오 헬스케어
----	----------

3 인천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물류 배송 지능형 로봇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실내외 경로계획 및 운동제어 기술 - 다중로봇 실내외 경로계획 및 운동제어 기술 개발 ○ 국제 표준(ISO 13482)을 만족한 안전기술 - 개발 제품의 ISO 13482 인증 취득 ○ 유니버설 파지 기술 - 공산품/일상 생활 물품 1000종 이상 안정적 파지 가능 ○ 염가형 실내외 자율주행 센서 기술 - 센서융합을 통한 실내외 환경에서 강인한 염가형 센서 개발 ○ 로봇 통합 운영 시뮬레이터 및 관제 시스템 기술 - 다중 물류 핸들링 로봇 통합 운영 시뮬레이터 및 관제 시스템 개발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첨단자동차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첨단자동차
----	-------

4 강원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식품 위해인자 신속 검출 시스템 개발
개발 방향	○ 식품 위해 곰팡이 독소 검출 기술 - 식품 위해 곰팡이 독소의 신속 검출법 개발 ○ 식중독균 핵산 검출 기술 - 식중독균 핵산 분석기술 구축 ○ 식중독균 검출 배지 - 식중독균 신속검출을 위한 배지 개발 ○ 단백질 상보 활성 측정 기술 - 식중독균의 단백질 상호작용 측정 기술 구축 ○ 식중독균 유래 펩타이드 검출 기술 - 식중독균별 펩타이드 검출법 구축 ○ 식중독균 검출방법 관련기술(샘플링/전처리) - 식중독균 검출을 위한 식품 시료의 전처리 기술 구축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세라믹 복합신소재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ICT융합헬스
----	---------

5 제주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실시간 인터랙션 콘텐츠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신체 동작 인식 인터페이스 기술 - 신체 동작 인식 인터페이스 솔루션 제공 ○ VR용 리모트 렌더링 기술 - VR용 실시간 리모트 렌더링 솔루션 제공 ○ 절차적 건축물 생성 자동화 기술 - 절차적 건축물 생성 자동화 솔루션 제공 ○ VR용 UI 미들웨어 - VR용 UI 미들웨어 솔루션 제공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청정헬스푸드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스마트그리드
----	--------

6 중복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현가장치 핵심부품(토션스프링)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ERW Pipe 대상 철강판재 소재 개발 기술 － 압연 기술 최적화, 코일의 품질 정형화, 표면 산화 최소화 기술, 표면 산화 억제 기술 ○ ERW Pipe 용접 강건성 확보를 위한 정밀 인발 가공 기술 － 모관조직 미세화, 조직안정화, 냉간가공 영향 제거, 내식성 개선, 변형/응력 제거, 표면 강화 ○ 중공형 코일 스프링 제조 기술 － 고장력 인장강도 확보, 연신율, 부식성 방지 기술, 탈탄방지기술, 잔류 응력 향상 기술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지능형IT부품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바이오 헬스
----	--------

7 충남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친환경 자동차용 전장 및 제어·열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저온운전 모터 냉각을 위한 유냉 시스템 - 냉각성능 향상을 위해 오일을 직접 모터 내부로 유입시키는 유냉 시스템 적용 ○ 저온운전 히트펌프 시스템 모듈화 기술 - 고효율 친환경 시스템으로 개발 진행, 전기자동차에서 냉난방 시스템 운전으로 인한, 주행거리 문제 해결 ○ 전기자동차 융합형 열관리 시스템 기술 - 시스템통합화 제어 기술 개발 ○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 배터리의 운전 온도는 전기화학 반응, 충·방전 효율, 배터리의 효율과 신뢰성, 전하 수용성, 안전, 차량 수명 개선 ○ 전기자동차용 전기장치 냉각시스템 - 전동식으로 변환시켜 높은 냉각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장비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친환경자동차부품
----	----------

8 대전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IoT용 스마트 센서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복합 환경 정보 측정 기술 - 온도, 습도 등 복합 센서를 활용한 환경 정보 측정 기술 ○ 자가 전원을 포함한 IoT용 센서기술 - IoT 센서 장기 사용을 위한 저 소비전력 센서 기술 ○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른 스위칭 기술 - 네트워크 트래픽 감지 및 배치를 위한 스위칭 기술 ○ 실시간 재난감지용 환경 감시 센서 기술 - 환경 센서 기반의 실시간 재난 분석 및 감지 기술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무선통신융복합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무선통신융복합
----	---------

9 세종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정보 시스템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시스템 상황 대응형 실시간 교통안내 시스템 - 실시간 상황 대응형 교통안내 SW 개발 ○ 스마트 대중교통정보 공유 및 통합결제 시스템 - 딥러닝 기반 교통상황 인지 및 판단 SW 개발 ○ 딥러닝 기반 교통상황 예측기술 - 딥러닝 기반 교통상황 예측 기술 개발 ○ 영상 정보 이용한 교통사고 자동 감지 및 가해자/피해자 선별 기술 - 교통사고 자동감지 및 가해/피해 선별 SW 개발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첨단수송기기부품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첨단수송기기부품
----	----------

10 광주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바이오용 반도체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MEMS 기반 초소형 바이오센서 및 센서 어레이 - 빠른 센싱 및 정확도 향상 ○ 광전자/자기장 센서 - 초고감도, 고성능 바이오센서 칩 기술 확보 ○ 비침습적 혈압측정 센서 - 복수 센서 출력 실시간 신호처리 단일 칩 제작 ○ 혈액 진단 시스템/센서 칩 - 센서 픽셀 수 증가 시 집적도 향상 및 노이즈 제거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지능형 스마트 기계부품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광융합
----	-----

11 전북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고성능 탄소섬유 소재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고성능 탄소섬유 물성 향상 기술 - 고성능 탄소섬유 소재개발 및 제품화 ○ 탄소섬유 접착성 향상 기술 - 고성능 전극용 열전도성 소재 개발 및 제품화 ○ 탄소섬유 인장강도 향상 기술 - 고성능 탄소섬유 소재 표면개질 특성 및 제품화 ○ 탄소섬유 표면처리 기술 - 탄소섬유 소재 접착특성 및 제품화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지능형 기계부품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해양설비기자재
----	---------

12 전남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선박충돌 감지 시스템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해양환경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 해양 기상정보 처리기술 고도화 구현 ○ 선박의 충돌감지 및 회피 알고리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 선박 조종운동 예측 알고리즘 구현 ○ 실시간 해양환경 및 선박운동 성능기반 최적항로 결정을 위한 통합 운영 시스템 기술 - 최적항로 생성 및 항로 감시기술, 부가저항 추정, Cross Flow Drag 추정 및 상호 우열비교 알고리즘 구현 ○ 자율운항 선박 운동 예측 기술 - 통합 해양환경 탐지 장치 설계/제작 구현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에너지산업(지능형 안전관리분야 포함)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청색청정환경
----	--------

13 경남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자동차용 보조 공조제품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발열 온도 조절 가능한 유연 면상 발열체 구현 기술 - 온도조절 가능한 고효율 유연 면상 발열체 소재 및 온도조절기술 개발 ○ 고효율 면상 발열체 개발 기술 - 온도조절 가능한 고효율 유연 면상 발열체 소재 및 온도조절기술 개발 ○ 고온 안정성 면상 발열체 기술 - 고온 안전성 확보 대용량 제조 가능한 면상 발열체 제조기술 개발 ○ 저비용 탄소 발열체 제조 기술 - 저비용 탄소 적용 대용량 제조 가능한 면상 발열체 제조기술 개발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지능형기계부품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항노화 바이오
----	---------

14 부산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AI기반 데이터 가치 고도화 플랫폼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AI 및 머신러닝,탐색적데이터분석 융합 기술 － 학습데이터와 신규데이터 내 오류데이터 탐색기술 개발 ○ AI 기반 오류 데이터 보정 및 재생 기술 － 오류데이터의 분류 및 보정,재생 방법론 개발 및 코드개발 ○ 오류데이터 식별 및 탐색 기술 － 정형/비정형 데이터 통합 기술개발 ○ 데이터 품질관리 기술 － 데이터 가치와 품질 통합기술 개발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지능형기계부품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지능형기계부품
----	---------

15 울산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수소차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수소전기차 스택 부품 국산화 기술 – 수소전기차 스택 부품은 분리판, MEA, 기체확산층, 가스켓, 엔드플레이트, 인클로저 ○ 수소전기차 수소공급장치 국산화 기술 – 이젝터, 수소공급밸브, 워터트랩, 드레인밸브, 퍼지밸브, 공기차단기 ○ 수소전기차 수소저장장치 국산화 기술 – 수소탱크, 고압레귤레이터, TPRD, 센서 ○ 수소전기차 전장장치(E-BOP) 국산화 기술 – 배터리, 모터, 감속기, 인버터, 컨버터 등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첨단화학신소재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조선해양
----	------

16 대구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고령친화 기기 및 시스템
개발 방향	○ 근골격계 재활 및 보조기기 - 신체능력 측정 및 평가기술을 바탕으로 운동 맞춤 기술 및 자동부하 설정기술개발 ○ 이송 보조기기 - 바닥 생활자의 기립 및 이동을 위한 메카니즘 구현 기술 개발 ○ 체압 분산용 소재 개발 - 잔기를 사용하지 않고 체압을 낮추거나 해소할 수 있는 소재(예: 겔, 폼 등) 개발, 유지관리가 용이한 내구성 강한 소재개발 ○ 도시락용 급속 냉동기술 - 단시간내 냉·해동 할 수 있는 기술개발 ○ 신체능력 평가를 위한 측정기술 - 보조자 없이 단독으로 균형 및 근력 측정 및 분석 기술개발 ○ 노의, 사전인식 기술 - 생체반응을 감지기술개발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첨단소재(금속포함) 부품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분산형에너지
----	--------

17 경북

○ 특화전략 기술분야

분야	유해인자 차단 섬유 기술 개발
개발 방향	○ 고효율 에어필터용 부직포 제조 기술 - 압력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제거효율 극대화 ○ 생물학적 유해인자 차단용 섬유 제조 기술 - class4이상의 바이러스차단 가능 소재 개발 ○ 항균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유해인자 제거용 섬유 제조 기술 - 세탁내구성이 우수한 항균/항바이러스 가공원단 개발 ○ 유해인자 차단 방호복 섬유 제조기술 - 투과저항성이 우수한 방호복 소재 개발

○ 도전다각화전략 산업분야

분야	친환경 자동차 부품(2차전지 포함)
----	---------------------

○ 지역연계전략 산업분야(17개시·도기준 타시·도와 연계 필수)

분야	지능형 디지털기기
----	-----------